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44

발의연월일: 2021. 3. 19.

발 의 자:한기호·지성호·홍준표

조태용 • 조수진 • 신원식

이 영・박대수・윤창현

이철규 · 장제원 · 백종헌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961년 제정된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에서 '향토'라는 용어를 사용한이후, 변화된 사회환경과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이 변함에 따라 '향토'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1961년 제정된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을 「예비군법」으로 '향 토예비군'을 '예비군'으로 개정한 바 있고, 최근 「병역법 일부개정법 률안」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.

이에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상에 표기되어 있는 '향토방위'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'지역방위'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4 조의2제3호). 법률 제 호

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2제3호 중 "향토방위"를 "지역방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2(사업) ① 재향군인회는 제	제4조2(사업) ①
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<u>향토방위</u> 의 협조 및 지원	3. <u>지역방위</u>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